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20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유용원 · 김소희 · 김예지
조승환 · 성일종 · 이현승
강선영 · 김은혜 · 윤한홍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 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 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 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

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 2조제5호 신설 등).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중대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험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6조 중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를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범죄가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인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국가중대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협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u></p>
<p>제6조(인도범죄) <u>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u></p> <p><u><신설></u></p>	<p>제6조(인도범죄) <u>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p> <p>1. <u>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u></p>

